

2020년도

무형문화재위원회
제4차 회의 안건

일 시 : 2020. 6. 19.(금) 14:00

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목 차
--

【심 의 사 항】

1	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‘판소리(흥보가)’ 보유자 인정	비공개
2	전통예능 분야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	비공개
3	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‘처용무’ 전수교육조교 인정	비공개

【검토사항】

1	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‘판소리(심청가)’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	비공개
2	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‘판소리(수궁가)’ 보유자 인정조사(1단계) 결과 검토	비공개
3	‘여성국극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	비공개

심 의 사 항

1.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‘판소리(흥보가)’ 보유자 인정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

2. 전통예능 분야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

3.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‘처용무’ 전수교육조교 인정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

검 토 사 항

1.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‘판소리(심청가)’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

5.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‘판소리(수궁가)’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

3. ‘여성국극’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

-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(회의록의 비공개)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.